

독일판례 2

독자의 편지를 공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올덴부르크 지방법원 1986. 7 14 자 판결-5 O 1824/86 사건-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004 조,

판시사항

정치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가 신문에 공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주장된 잘못된 행동이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버린 것이었으며,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이를 공표할 의도로 쓴 것은 아니었고, 또한 위 공표된 내용 그 자체로부터, 편지를 쓴 사람은, 그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로써 그 정치인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사실개요

원고는 활동적인 정치인으로서 주의회 의원의 선거에 출마하고 있었다. 피고는 매월 발간되어 무상으로 배부되는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피고는 위 잡지에, 원고가 속하고 있는 정당과 같은 정당에 속하고 있는 다른 정당원인 S 씨가 위 정당에 대하여 쓴 편지를 게재하였는 바, 위 S 씨는 위 편지에서, 당헌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편지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근거로서,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판결이유

원고는 독일민법 제 1004 조에 관련해서, 제 823 조 제 1 항에 기하여 중지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는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위에 있어서, 수동적인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위 주장은, 그 문언대로의 의미에서 보면 피고가 발간하고 있는 잡지에 실린 S 씨의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 편지를 그가 발간하고 있는 잡지에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에 관하여 중립적으로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주를 달아서 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는 위 문제로 된 주장의 정신적인 공표자로서 독일민법 제 1004 조에서 말하는 침해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2. Aufl. Rdz. 7.49 m.w.N.참조).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는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위 주장이 설사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를 공표할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즉 위 주장이 설사 진실이라 할지라도, 문제로 되고 있는 위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피고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사적 영역을 침해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원고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격권이라는 것은,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소위 기타의 권리로서 승인되어져 있고, 이는 독일기본법 제 1 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인간의 가치 및 독일기본법 제 2 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생기는 것이다(Bverf G 35, 5. 202=NJW1973, 5. 1226 "Lebach" 참조). 독일기본법 제 1 조 및 제 2 조는 모든 인간에 대하여, 사적인 생활을 여하히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에 대하여는 그가 그의 사생활에 관하여 타인의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이를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다(Bverf G, a .a. O 참조). 그리하여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는 주장은 사적인 생활영역 중에서 위와 같이 보호 받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위 피해자의 동의를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 사적 영역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 받는 것은 아니다. 즉 독일기본법 제 5 조에 의하여 보장 받고 있는 언론의 자유도 역시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인간의 가치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호받을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서로 저촉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익 및 의무의 비교와 형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Bverf G, a. a. O.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비교 · 형량을 하여 보면, 결국은 원고의 인격권의 보호라는 측면이 더욱 우선하여야 하는 결과로 된다. 위와 같은 비교 · 형량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서, 독일 「예술 및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제 22 조 내지 제 24 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상권의 보호에 관한 원칙들이, 일단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원칙에 따른다면, 우선은 첫째로 문제로 되고 있는 그 개인이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문제로 될 것이고, 둘째로는 그의 행동의 방식이 문제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그 자신을 공적인 비판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개인적인 사건에 관한 보도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 주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Wenzel a. a. O., Rdz. 3.50 참조).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보도가 행하여진 그 결과가, 보도가 행하여진 시점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의 여부도 역시, 결정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공적인 정보에의 이익은, 보도되어진 결과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와 서로 상당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OLG Munchen, Schulze OLGZ 58 "Kanzler Kandidat" 참조). 위와 같은 원칙들에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의 권리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보면 원고의 인격에 관한 공적인 정보에 대한 이익이, 사적인 생활의 보호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인격권에 기한 필요성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고는 X시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주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널리 알려진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원고와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 시대에 있어서 하등의 중요한 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러한 사정 그 자체만은, 시장으로서 그리고 주의회 의원의 입후보자로서 원고의 인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타행위는 단지 한번 발생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이 설사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위 사건은 1986년 6월 15일자의 주의회 의원선거보다 1년 이상이나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단지 한번밖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이러한 탈선행위는,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으로서 그리고 주의회 의원의 입후보자로서 원고의 인격을 판가름함에 있어서 하등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986년도의 주의회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공공적인 가치가 부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격권의 보호의 필요성과, 공적인 정보에의 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공표하고, S씨가 쓴 위 편지가, 그 수신인 및 그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면, 일반대중에 대하여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S씨는 위 편지를 사회민주당의 Weser-Ems 지구 지구당 위원장 앞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또한 위 편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해 당헌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를 개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원고가 그의 어머니에게 대하여 한 행동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 피고가 위 편지를 공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S씨는 그의 1986년 5월 23일자의 원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명은 그 이후에 행해졌지만), 양당사자 사이의 정당내부에 있어서의 화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위

편지는 그의 동의없이 인쇄되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피고의 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한 바에 의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편지의 인쇄는 S 씨와의 의논도 없이 임의로 게재된 것이었다. 피고의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S 씨는, 1986년 6월 15일자의 주의회 의원선거일 이전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가 공표한 S 씨의 위 편지는 적어도 1986년도의 주의회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일반 공중을 위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장들은 일반 공중에 대하여는 하등의 중요성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S 씨는,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는 정보를, 피고 및 피고의 부인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점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S 씨의 1986년 5월 23일자의 편지 및 피고의 부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피고 및 그의 부인도, 원고가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을 하고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원에 관하여, S 씨의 편지를 읽은 독자들은 하등의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편견없는 일반적인 독자들은, 원고가 1985년 4월 29일 그의 생일축하파티에서 그의 어머니를 구타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사실에 관하여는, S 씨 스스로가 이를 목격한 증인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S 씨는 그의 정보를 피고 그 자신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은폐되어있기 때문에,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공표함에 있어서, 본건에 있어서 문제로 되고 있는 독일기본법 제 1 조, 제 2 조, 및 제 5 조에 규정된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면,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은, 인간 존엄의 보호 및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라는 기본권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